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사 사옥이 없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옥신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 공매하는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업무용빌딩 신축을 위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4. 1. 31.경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면서 추가되는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용역업을 포함시켰으나 재무부는 같은 해 2월 28일경 원고가 추가한 목적사업 중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용역업을 삭제하고 정관 변경인가를 함으로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재무부는 1994. 3. 7.부터 3월 19일까지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의 자본금, 임차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 향후 임·직원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실제 필요한 사옥의 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고,

원고는 정관상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자본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은 부적절한 자산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4. 12.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 중 1/2 이상을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 재무부는 같은 해 4월 29일자로 원고의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면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 한정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위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고는 위 매각지시에 따라 1994. 6. 10.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지분을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의3에 따라 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가산세 포함)에서 자진납부한 세액을 뺀 155억 1,046만 6,200원을 1995. 1. 16.자로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